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06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김은혜 · 김정재 · 김미애
김선교 · 박수영 · 곽규택
안상훈 · 최수진 · 김기현
서천호 · 주호영 · 고동진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가의 부패 대응능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조직적·구조적 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또는 특별절차를 통해 강화된 불법수익 환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CAC) 역시 부패재산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회복하여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에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대상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 혼화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의 추정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몰수 및 추징의 집행 특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 확정 전에 불법수익의 처분·은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국가는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함(안 제12조).

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

별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서 시행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와 관련한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등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사건”이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범죄에 관한 형사 사건을 말한다.

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 제347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범죄

라. 그 밖에 대장동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2. “대상범죄행위”란 제1호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 “대상재산”이란 불법수익 및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을 말한다.

가. “불법수익”이란 대상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취득한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란 대상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대상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장 대상재산의 몰수 및 추징

제4조(대상재산의 몰수) ① 대상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대상재산이 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대상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대상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4조에 따른 몰수는 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

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情)을 알지 못하고 그 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이 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6조(추징) ① 대상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몰수·추징의 특례) ① 국가 외의 범죄피해자가 대상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대상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대상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대상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대상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의 추정) ①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범죄행위를 한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및 그 밖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추정은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대상재산의 보전 및 집행

제9조(보전명령) ① 검사는 대상사건에서 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에 해당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보전명령은 피의자, 피고인, 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추징에 충당할 재산을 소유·소지 또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④ 보전명령의 청구에 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형사소송

법」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전명령의 집행, 효력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0조(강제수사 규정의 준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대상재산, 혼화재산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따른 강제수사는 대상사건의 수사 및 대상재산 등의 추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몰수 및 추징의 집행) ① 대상재산의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정한 날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는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민사소송

제12조(대상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특례) ① 국가는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3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13조(시효의 정지) ① 대상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대상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신고자의 보호) 대상사건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의 특례)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대상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무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